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민 01237- <i>110</i>	기안용지 (전화: 731-6231)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장 <i>Han 11/11</i>	
수신처 보존기간	5년		
시행일자	'89. 11. 13		
보조기관 관	시민과장 전결 문서관리과장 <i>KZ.</i>	협 조 기 관	법무 담당관 심사필 <i>89.11.17</i>
기안책임자		김 일 용	
경유 수신 참조	각안 참조	법 무 명 의	문서 통제 <i>발을 속 1990.11.14</i> 장
제목	관인 교부 승인		
제1안	내부결재		
<p>1. 지간22103-4호('89.11.10)와 관련입니다.</p> <p>2. 서울특별시 조례 제2509호('89.11.3)의 공포에 따라, <u>서울특별시 지하철</u></p>			
<u>건설본부장</u> 의 관인 신조 교부 승인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바,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가. 승인사항			
관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사용기시 일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의인	한글전서체 2.7cm x 2.7cm 정사각형	타로불임	'89.11.14.

1505-25(2-1) 일(1)감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m<sup>2</sup>  
 85. 9. 9. 승인 “내가아인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가 40-41 1988. 12. 20.

*14 ✓*

47

파로불임 : 1. 승인인영 1부.

2. 공고(안) 1부. 끝.

제2안

수 신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

→ 211호 3층 3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제 목 같은 건

1. 지건22103-4호('89.11.10)와 관련임.

2. 귀 부의 관인 신조 교부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니, 관계법규

에 의거 관인의 관리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할 것.

가. 승인사항 : 제1안 제2호 가항 이기시행

파로불임 : 승인인영 1부.

제3안

수 신 총무처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관보 개재 의뢰

1. 우리시 산하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관인 신조 교부사항을 관인

규정 제9조에 의거 파로불임과 같이 관보 개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불임** : 1. 공고(안) 2부.

## 2. 인영부 2부. 꼴.

제4안

수신 공보관

참 조 **홍보개혁담당관**

## 제 목 시보 제재 의뢰

## 1. 우리시 산하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관인 신조 교부사항을 서울

특별시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따로불입과 같이 시보 계재 의뢰하니, 적의 처리할 것.

**파로불임** : 1. 공고(안) 2부.

## 2. 인영부 2부. 끝.

1505-25(2-2) 일(1)을 “내가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 268mm 인쇄용지 2쪽 60g/m<sup>2</sup>  
85. 9. 9. 출판 가 40-41 1988. 9. 23

14-2

승 인 인 영

구 분	직 인 인 영
신조승인	 <p>서울특별시 [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924 호

정식	1389 // 14	258호
발행자	■ 대체	■ 관리자
	X	

공 고 (안)

관 인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89 . 11 . 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1989 . 11 . 14.

2. 승인관인내역 : 따로붙임.

서 울 시 지 하 철 건 설 본부

지전 22103 -

313-4923

89. 11. 10.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시민과장

제목 관인 교부 승인 요청

1. 서울특별시 조례제2509호(89.11.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같이 당본부 직인 교부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관인 교부 신청서 각 3부.  
2. 관인 대장 각 3부.  
3. 인 영 부 3부.  
4. 시장 팽침서 사본 1부. 끝.

선 결				결재 (승인) (날인)		
접수일자 (날)	1989. 11. 10	시	분	50073		
처리과				45-4		



서 울 시 지 하 철 건 설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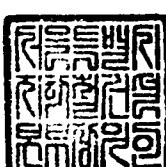
관 인 교 부 신 청 서

수 신 : 서울특별시장

'89. 11.

신청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유	서울특별시 조례 제2509호(89.11.3)에 의거 기관신설			
세 체 규 격	한글 전서체 2.7cm x 2.7cm 정사각형			
관 인 명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인			
새 긴 날	1989. 11.			
새긴 사람	주 소	강동구 길동 326-3	성 명	이 계 통
재 료	수 우 각			
사용 개시	1989. 11.			
비치처및 관수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총무부 서무과장			
관인의인영				

관 인 대 장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용 도	건설본부 업무용
인 영	
사용개시일자	1989. 11.
개인일자	
폐인사유	
폐인당시인영	
비 고	

○ 인 영 부

관인명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직인
· 인 영	

조  
례

분류자료  
보존기간

법무02134-1245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수신처

영구

보존기간

69. 11.

보  
기  
관

부시장

기획기획실장

기획실장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기안책임자

박 성 중

기안용지

(전화: 731-6156)

시행상  
특별취급

시 장

협  
조  
기  
관

시정연구관 총상

시정개발담당관

조직관리계장

문서제작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2509

(제 1 안) 내용 결재

법무01210-1145호('89.10.12.) 및 법무01110-1224호('89.10.

30)에 의거 국무총리에게 승인 요청한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와 20건

조례 및 규칙이 국행삼01210-631('89.11.3.)호로 승인되었기 별안과 같이

시보에 개재 공포코자 합니다.

조례 제 2509  
2509

2509

첨 부 : 1. 공포안 각 1부.

규칙 제 2300  
2300

1/3

2. 국무총리 승인은 1부. 끝.

(제 2 안)

월안은 내부국서민과에

보관함

수 신 : 공보관

제 목 : 선보개재(

별첨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의 20건 조례 및 규칙을 시보

에 개재 공포 할것.

첨 부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의 20건 조례 및 규칙 각1부.

(제 3 앤)

수 신 : 시정개발담당관

제 목 : 조례공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의 20건 조례 및 규칙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공포하였으니 시행에 차오 없도록 할것.

첨 부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의 20건 조례 및 규칙 각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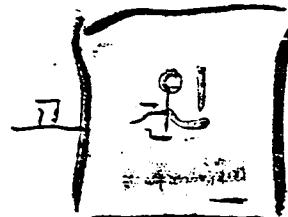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설치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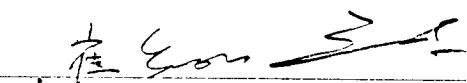
1989년 11월 3일

# 서울特別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案)

市長

總務管理本部長 諸海長

市政研究室長



綜合建設本部長 金一

交通局長

市政開發担当官印

# 地下鐵建設本部設置(案)

## 1. 第2期 地下鐵建設計劃

地下鐵의 持續的 建設 ————— 輸送分擔率 50% 까지

### ④ 長期路線網 構想

- 既存路線을 완성하고 新規 4個路線 等 — 156km 檢討中
  - 全地域이 步行으로 接近 가능한 路線網
  - 大規模 交通發生地域과 都心을 直接 連結
- 1段階 建設計劃 — 1992年 目標
  - 長期 構想路線中 交通量이 많은 路線 — 5個區間 47km 內外
    - 建設期間 — 4年
    - 建設費用 — 1회 1,800億金
    - \* 89預算 : 500億金

### ⑤ 推進日程

- 1段階 建設計劃案 作成 및 市民 公聽會 — 89. 5
- 財源對策, 建設計劃 確定 및 工事着手 — 89. 11

### ⑥ 建設本部 設置事由

- 第2期地下鐵建設 및 運營의 主體는 首都圈交通公團(假稱) 임法 律制定後 發足한 公團에 앞서 地下鐵建設事業의 旱速한 推進  
\* 89. 11月着工計劃을 爲해
- 着工段階에 우선 서울市傘下 地下鐵建設本部를 設置 運營도록 함

11  
시장